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홍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 부설로 한다.

제2조(위치) 본 센터는 본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교의 기관 및 교원이 수행하는 로봇윤리와 로봇법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 및 전자기술과 관련된 윤리와 법제에 관한 연구, 기타 과학기술발전에 대응한 산업윤리와 산업법제에 관한 연구와 사업의 수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교통, 정보통신, 의료·복지, 기타 각 산업분야에 발생하는 로봇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 기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와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비롯한 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화 및 자동화 기술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2. 정보통신 및 전자 기술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3. 의료·복지, 교통 및 인프라 기술 등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4. 신기술 표준에 관한 연구
5. 자율주행 차량 기타 로봇 관련 법적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연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 (임원 및 기구)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운영위원 약간 명
3. 감사 1인

②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감사는 센터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소장의 임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선임 등) ①소장과 감사는 본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운영위원과 간사는 소장이 임면한다.

③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계

제7조 (경비) 본 센터의 경비는 센터의 자체 수입, 산학협력단의 보조금 및 외부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회계)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산학협력단의 예산과 결산 절차를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9조 (운영세칙) 본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